

한국체육대학교 상표관리 규정

제정 2014. 9. 2. 규칙 제6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를 나타내는 상표의 권리 보호와 수요자의 상표권 사용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표법」의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상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체육대학교를 표시하는 명칭, 로고, 마스코트, 기타의 표지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와 「한국체육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 로고, 마스코트 및 기타의 표지

2.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3.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2장 상표의 관리

제3조(상표의 관리) 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본교를 나타내는 상표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총장은 본교의 상표에 관한 기획, 관리, 보호 등 관련 제반업무를 한국

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4조(상표의 허용범위) 본교의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의 형태나 색상 등을 임의로 변형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상표의 사용승인

제5조(사용 신청) 본교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상표 사용자

- 가. 본교의 학부, 대학원, 평생교육원 및 본교 동문(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 포함)으로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나. 교직원과 본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본교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다. 본교의 교직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로서 해당 연구성과물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구비서류

- 가. 상표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 다. 각서(별지 제3호서식)
- 라. 상표를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의 견본. 다만, 견본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상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
- 마. 상표를 부착할 상품의 안정성 및 우수품질을 입증하는 자료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설임을 입증하는 인증자료
- 바. 식품, 의약품, 동작도구 등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증명 자료
- 사. 당해 상표 사용허락이 본교의 명망을 제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 아. 본교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

료(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경우)

제6조(사용 승인) ① 산학협력단장은 한국체육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사용 승인여부와 사용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본교가 보유한 기술과 특허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하였는지의 여부
2. 상표 사용대상 상품, 활동, 간행물과의 관계가 본교의 교육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3. 본교 교직원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4. 상표가 사용될 대상 상품이나 활동으로부터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에 비추어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
5. 본교 졸업생으로 체육관, 학원 등을 개원하여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지 여부
6. 본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를 포함하여 이미 상표사용을 승인한 기업체와 사업영역이 중복되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
2.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와 제23조의 담배용품, 흡연을 위한 보조 도구
3. 「형법」 제246조에 정한 도박에 제공되는 도구(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도 포함한다)와 제248조의 복표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화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서, 오용될 경우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동시에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는 것

5. 선교를 위한 기념품이나 책자와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례용품
6. 남녀의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성별·인종·지역·연령을 기초로 부당한 차별을 담고 있는 상품

③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상표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직원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본교의 재학생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통상의 활동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본교의 홍보를 위해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제4장 상표의 사용계약

제8조(상표의 사용계약) 상표사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사용 신청인과 상표사용계약(별지 제4호서식)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사용 계약기간) ① 영리목적의 상표사용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면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상표사용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② 비영리 목적의 상표사용 계약기간은 상표사용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③ 사용권의 등록과 말소비용은 상표사용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결정) 상표권자의 사용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표사용의 독점성 여부
2. 상표사용의 영리목적 여부
3. 상표 사용자와 본교와의 관계
4. 상표 사용자의 사업규모 및 매출규모
5. 상표의 사용이 대상상품 및 대상 서비스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제11조(사용료의 수입처리) ① 상표의 사용승인에 의해 징수한 사용료는 상표의 유지와 관리 등을 위한 산학협력기금으로 활용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12조(사용현황 확인 및 보고) ① 상표사용권자가 제6조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표사용권자는 당해 상표사용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견본(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서비스표 사용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의 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와 해당제품의 품질에 대한 실험 및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상표사용권자는 매년 1회씩 산학협력단장에게 상표의 사용현황을 보고하고 사용승인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요청) 상표사용권자가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상표를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상표사용권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와 처리) ① 상표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상표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 하였으나 현저하게 개선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표사용이 제1조의 목적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상표사용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 또는 계약상표 이외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
 5. 제5조제2호에 의하여 승인된 시설 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6. 제3자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위탁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7.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폐업, 휴업 등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9. 상표 사용과정에서 본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한 경우
- ② 제1항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상표사용권자는 그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비록 사용계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교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광고문구의 금지대상) 상표사용권자라 하여도 다음 각 호와 같은 문구를 광고,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제품의 품질을 본교가 보증하거나 인증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문구
2. 교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본교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문구

제17조(신규상표 출원 및 유사상표 출원금지) ① 본교에 대한 새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기존 표지의 상표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상표 및 명칭과 유사한 상표는 출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산학협력단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

제18조(서비스표 관리) 서비스표의 관리 등에 관하여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상표의 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4. 9. 2. 규칙 제6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체육대학교 상표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한국체육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위 규정 및 지침 중 사용허락에 관한 부분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2. 한국체육대학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승인한 상표와 승인 기간만 사용한다.
3.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경제적인 책임은 신청인이 지며,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4.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표사용료 및 상표사용금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5. “위원회” 및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청인과 상표사용 허락관계에 그치며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제품의 광고가 한국체육대학교의 명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상표사용광고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상표사용허락 계약서

상표권자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사용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상표권에 관하여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상표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표 : "갑"이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등에 관한 상표권 및 한국체육대학교와 그 내부조직의 표장 또는 표지 중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를 말한다.
2. 계약제품 : 계약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을 말한다.
3. 매출액 : 계약제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상표권의 표시) 계약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상 표	사 용 형 태

제4조 (사용권의 기간 및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한다.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종료

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57조)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계약제품 :

제5조 (사용권 설정 등록) “을”이 사용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말소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상표사용료의 지급·정산 및 보고) 상표사용료는 선급상표사용료와 경상상표사용료로 구성되며, “을”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상표사용료를 “갑”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선급상표사용료로 금()원정을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경상상표사용료를 계약기간동안 연도별(또는 분기별)로 지급·정산한다.

③ 경상상표사용료의 최저금액은 금()원정으로 하며,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가 최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로 한다.

④ “을”이 선급상표사용료 및 경상상표사용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해당연도 ()은행 당좌대월금리를 곱하여 지체일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연체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상표사용료는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한다.

⑥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⑦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경상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⑧ 전 항에 따른 실사결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상상표사용료와 이미 지급한 경상상표사용료 사이에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의 2배를 “갑”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또는 제8항은 “을”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상표사용권의 실시)

- ①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개척 및 상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갑”은 ‘계약상표’가 제품의 품질 보증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내용의 면책조항(disclaimer)을 삽입할 수 있다.
- ④ “갑”은 “을”에 대한 상표사용허락 이외에 “을”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상표사용에 있어 이런 후원·감독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상표사용료의 반환청구 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상표의 사용법)

- ① “을”이 계약제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채를 포함해 “갑”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전항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제품의 견본제출) “을”은 계약제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계약제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갑”에게 송부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계약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갑”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제품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등의 견본제출) 포장, 용기, 라벨 혹은 광고 및 판촉자료에 계약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포장 등의 견본을 먼저 “갑”에게 제출해야 하고 포장 등의 사용에 앞서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 ① “을”은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계약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상표를 붙이지 않는다.
-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갑”은 “을”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검

사를 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품질 불량한 계약제품에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계약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보고) “을”은 본 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상황을 분기별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유사상표 출원 금지) “을”은 계약상표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계약상표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지 않고 또한 출원하게 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권의 양도 등)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권의 침해)

- ①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에 의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갑”이 본 건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일 이내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교내벤처기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구조 등의 변경 등으로 교내벤처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 “을”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계약을 체결한 후 지분구조 등의 변경 등으로 자회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 기타 “을”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상표사용허락을 받고도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8. 제6조제7항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제반서류 조사에 불응할 경우
9.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된 경우 또는 회사청산이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을”이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4. “을”이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③ 본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때까지 “갑”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지일까지의 경상상표사용료를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한국체육대학교과 관련된 상표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홍수·재앙·정부법령·폭동·반란 등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보정·정정될 수 없다.

제20조 (기타)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

제21조 (특약사항)

제22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을”은 “갑”에게 사용개시 이전에는 금()원, 사용개시 이후에는 원래 지급할 사용료 금액의 ()%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갑”의 착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p>(갑)상표권자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 ○ (인)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오륜동</p>	<p>(을)통상사용권자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주소 :</p>
---	---

한국체육대학교 상표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 사 용 자 :

○ 주 소 :

○ 계 약 제 품 :

○ 상 표 종 류 : 로고와 한국체육대학교 문구 조합 등 명시

○ 지 정 내 용 : 상표사용 범위, 기간, 요율 등 명시

한국체육대학교 상표 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한국체육대학교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